서 울 특 별 시 서 울 물 재 생 시 설 공 단 설 립 및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기 의원(찬성자 : 11명)

나. 의안번호 : 제 2704 호

다. 발의일자 : 2025. 5. 21.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27조제2항제1~3호).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나. 공단 이사장이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원안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6. 03.~06. 07.) 결과 : 1건(〔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사장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감독) ① (생 략)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7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황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76조[1] 및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6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물재생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감사와 2개 본부(경영기술본부, 물재생운영본부), 3개 처, 2센터, 1실(감사실) 및 1개 연구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규모는 정원 391명, 현원 38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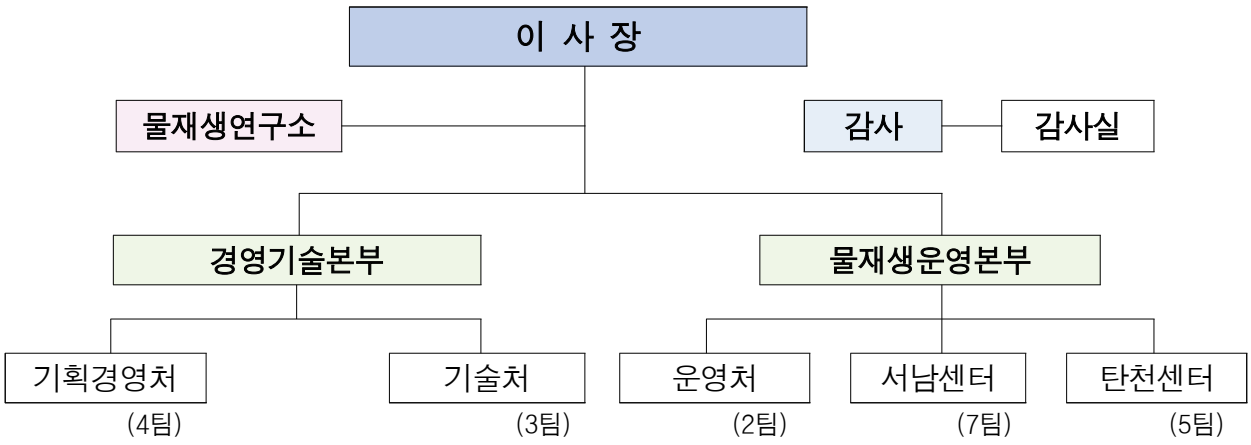

[그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조직 현황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2]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사업'을 수행[3]할 수 있음에 따라 현재 서울시로부터 서남 및 탄천 물재생센터 운영을 관리대행 중에 있으며, 그 사무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2)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자체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표]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사무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안 제27조제2항은 현행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토록 하면서,

- 이에 따른 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제1호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2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제27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은 불특정하고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 동 개정안 문구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여 그 규정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재량을 통제하고 공공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 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살펴보면,

- 먼저, 안 제27조제2항제1호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의 조직 및 정원은 예산 및 업무 범위와 직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통제 및 행정 효율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규모나 조직 개편이 시장의 관리하에 이뤄지도록 명시하는 것은 행정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해 보이며,

- 공단의 조직 확대나 슬림화 등 구조적 변경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판단이 반영되므로 인력의 과잉이나 부족, 중복 업무 등의 비효율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27조제2항제3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40조[4]에서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동 조항은 공단이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주요 자산에 대하여 시장 승인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장 및 주무부서 차원의 1차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 공공시설 운영 특성상 대규모의 부동산이나 설비 장비 등의 거래가 수반될 수 있어 재산의 불투명한 이전이나 누수 방지를 위한 예방적 통제 장치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제2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

---

4) **「지방공기업법」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는 사항”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중요한 승인 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며 개정안 시행 시 구체적인 내부 기준 또는 운영 지침 등을 통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27조제3항은 안 제27조제2항의 시장 승인 사항 외에 실무적인 중요사항들(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에 대해 공단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무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조율과 견제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동 조항은 서울시가 공단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중요 의사결정이 서울시 행정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불필요한 충돌이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조율 규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 그 경우 공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서울시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장치로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 본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물재생시설과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공단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공단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는 입장임.

○ 다만, 입법예고(’25.6.3.~6.7.) 중 접수(1건)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의 의견을 살펴보면, 본 개정안에 대해

법 제51조[5]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법령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적 과잉 개입으로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 중 안 제27조제2항의 경우는 현행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7] 등 타 조례에 이미 명기되어 운영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고,

- 다만, 안 제27제3항에 대해서 서울노동이사협의회가 법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볼 때,

- 법 제73조[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

5) 「지방공기업법」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감독) ① (생 략)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7)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감독) ① (생 략)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8)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행기관인 만큼 서울시의 감독 권한 강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겨지고,

- 동 개정안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공단의 자율성과 서울시의 통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가지고 주무부서와의 실질적 협의 구조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독립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참고로, 제331회 정례회에 본 개정안 외에 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중인 5개 기관(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임.

[표] 제331회 정례회에 유사 내용으로 발의(김현기 의원)된 일부개정조례안 현황

조 례 명	안건 번호	발의 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04	2025.5.2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03	2025.5.2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99	2025.5.21.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00	2025.5.21.	주택공간위원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01	2025.5.21.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02	2025.5.21.	환경수자원위원회

관리·감독한다.
② (생 략)

[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물재생 시설공단		시설공단		교통공사		에너지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주택도시 개발공사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7조(감독)		제27조(감독)		제31조(감독)		제33조(감독)		제25조(감독 등)		제3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 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	② (현행과 같음)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항		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행과 같음)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사장은**	**(신 설)**	**③ 이사장은**	**(신 설)**	**③ 사장은**	**(신 설)**	**③ 사장은**	**(신 설)**	**③ 사장은**	**(신 설)**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 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외에 예산 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소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외에 예산 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외에 예산 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외에 예산 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외에 예산 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입법예고 접수 의견(1건)

1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견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무력화하는 조례개정을 중단하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202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법령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적 과잉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과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장에서 주무부서장으로 이전하고 **자율경영의 틀을 무너뜨리는 시도**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

장은 예산, 인사, 소송 등 **주요 경영 판단**에 대해 주무부서장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이는 명백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1조」가 보장한 **독립성**과 **책임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특히, 각 기관의 사업특성과 노사 관계를 무시한 채, 인사·임금·채용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일률적 사전개입을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 자율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사 갈등**을 구조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각 기관의 이사회에참여시키고 있으나, 실상은 이사회의 출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이 대리 참석하는 등 기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자율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기관의 본질적 역할**과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판단된다.

시민들에게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게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들이밀어, **자율경영·책임경영의 환경을 억압**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지연**을 유발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의회는 자율경영과 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례 개정을 즉

각 철회하라.

2. **서울시는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라.**

3. **일률적인 행정개입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환경을 보장하라.**

4. **노사자율의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사전검열 시도를 중단하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율경영 체제가 지켜지도록,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전향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6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일동